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5	제 정 일 자	2013.8.28
	하수도법				개정일자(번호)	2018.01.17(1)	쪽 번 호	1 / 3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배수구역	법 2 조 법 15 조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		☐ 인근하천으로 방류 ☐ 배수구역에 해당 됨		☐ 배수설비설치승인서	
	하수처리구역	법 2 조 법 15 조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		☐ 인근하천으로 방류 ☐ 하수처리구역에 해당		☐ 공공하수처리시설유입처리승인서	
	방류수 수질기준	법 7 조 규칙 3 조,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배수설비를 이용하여 분류식하수관거에 유입 처리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1) BOD 20 이하 2) SS 20 이하		오수환경관리 절차	
	<2018.01.17>							
	구분	1 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 처리시설	50 ㎡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부유물질(mg/L)	1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50 ㎡ 이상	모든 지역	부유물질(mg/L)	2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정화조	11 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기타지역	총인(mg/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제 3 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 1 절 배수설비 등	배수설비설치	법 27 조①,③ 규칙 22 조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신고 실시		☐ 해당 없음 ☐ 배수설비 설치		☐ 해당 없음 ☐ 배수설비설치신고서	
	하수유입신고	법 27 조④ 영 22 조③,④	아래 수질/수량 이상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수량변경 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변경신고 실시 1.BOD 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SS 가 80mg/L 이상인 수질의 하수(폐수의 최대량이 50 ㎡/일 미만인 경우제외) 2.오수최대량이 100 ㎡/일 이상인 하수		☐ 해당 없음 ☐ 하수유입신고 실시		☐ 해당 없음 ☐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준공검사	법제 27 조⑤,⑥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해당 없음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 실시		☐ 해당 없음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5	제 정 일 자	2013.8.28	
		하수도법			개정일자(번호)	2018.01.17(1)	쪽 번 호	2 / 3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3 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 1 절 배수설비 등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법제 28 조	다음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1.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 해당 없음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실시		☐ 해당 없음 ☐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증		
제 3 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 2 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신고	법 34 조, 영 24 조 규칙 26,27 조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식당, 샐러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 [영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역구분	처리시설	비 고			
				하수처리 구역 밖	오수처리시설	1 일 오수 발생량 : 2 ㎡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			
	하수처리 구역 안	정화조	1 일 오수 발생량 : 2 ㎡ 이하인 건물 등						
	하수처리 구역 안	정화조	수세식 변기를 설치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제외 기준 1)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 하는 경우 2)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등의 증축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법 35 영 25 조	- 건물 등을 증축,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증가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증대 1) 해당 증축, 도변경으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 시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 일 오수 발생량이 2 ㎡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 시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오,폐수병합처리		법 36 조 규칙 22 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오수를 통합처리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법 37 조 규칙 30 조	법제 34 조,제 35 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법 38 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시 시공업 등록을 한자가 시공 해야 함.	용역계약 시 공사업체 적법성 확인		설치/공사 계약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5	제 정 일 자	2013.8.28
	하수도법			개정일자(번호)	2018.01.17(1)	쪽 번 호	3 / 3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절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운영상 금지사항	법 39 조①	법 39 조①항에 규정된 운영상 금지사항 준수 1.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운영상 금지사항 준수		일상점검표 슬러지 청소기록 오염도 측정기록
			유지관리, 위탁관리	법 39 조②~ 규칙 33,34,35 조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규칙 제 33 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유지관리기준 준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위탁관리하고 있음		
		보칙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법 66 조 영 제 37 조 규칙 67 조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1 일 처리용량이 50 ㎥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2) 처리대상인원이 1 천명 이상인 단독정화조	해당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3)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							
[규칙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개정 2017. 12. 20.>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사람로 해당 분야에서 1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해당 분야에서 3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용량이 1 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기술관리인 준수사항	규칙 66 조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술관리인인 교육	법 67 조, 영 38,39 조		기술관리인 법정 교육 이수(5 년마다 1 회 이상) 1)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3)법 제 66 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